#### [금화저축은행]

# [정기적금인터넷] 정기적금 상품설명서

- ◈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◈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 1 │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**상 품 명** : 정기적금(인터넷)

■ **상품특징** :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목돈

마련 상품

### 2 거래 조건

□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수덩아시는 동상이나 당시 또는 비내면 새털의 계좌상제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								
구	분			내 용				
가입대상		• 제한없음 (단, 비거주자는 제외)						
가입금액		•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계약금액 1만원 이상						
가입기간		• 6개월 ~ 60개월						
이자지급시기		• 만기 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<mark>[해당]</mark>	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"5천만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
제한 사항		<ul> <li>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li> <li>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</li> <li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</li> </ul>						
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						
	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18개월	24개월	60개월	
		기본이자율 (세전,연 %)	2.5	3.5	3.5	3.5	3.5	
<b>이자율</b> (세전연 %)	만기 후	<b>경과기간</b> 1개월 이니	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경과기간 이 율 1개월 이내 약정이율 1개월 초과 보통예금 이율					

구 분	내 용				
만기이자 산출근거	• 이자계산식 - 월부금액 × {계약월수 × (계약월수+1)/2 × 이율/12} (원미만 절사)  ※ 월부금이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 * 입금지연이자=월부금액X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365X입금지연이율(=약정이율) * 입금지연일수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계약월수(단,1일 미만은 1일로 절상함)				
수익률	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				
만기의 자동해지	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				
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	1개월 미만 : 보통예금 이율    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x 차등률 [단, 최저금리: 약정이율 X 50%]				
만기 앞당김 해지	•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할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 이자*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* 만기앞당김이자=만기지급액X앞당김이율(=약정이율+연1.5%)X앞당김일수/365				
만기일 경과후 월부금 입금	•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/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 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				
위법계약 해지권	<ul> <li>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</li> </ul>				
휴면예금 및 출연					

구 분	내 용			
원천징수 (수입제세)	■ 비과세종합저축  • 가입대상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■ 일반과세: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 ■ 법인과세: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			
분할해지	• 불가			
자동재예치	<ul> <li>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정기예금으로 자동 재예치할 수 있습니다. 정기적금으로 자동 재예치의 경우는 최초 가입시 납입한월 또는 일 부금액(납입금) 또는 원금 또는 원리금을 약정부금액으로 하여 연장 가능합니다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.</li> <li>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</li> <li>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</li> </ul>			
연계·제휴 서비스	■ 해당사항 없음			

## 3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대표전화 (032-526-6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kuemhwabank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· 금리변동형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#### ※ 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,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"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본인은 금화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## ◉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			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			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			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			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			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